

(1)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

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

(소득법 §163, §81③, 법인법 §76④, §121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◦ 적용대상 - 법인사업자 -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·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써 면세사업 <u>겸업자</u> *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·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(예: 10억원) 이상인 자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◦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◦ 발급 건당 200원(한도 연간 100만원) ◦ 적용기한: '18.12.31.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서 <u>미발급</u> 가산세 ◦ 공급가액×2%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<u>미발급</u> 가산세 ◦ 공급가액×2% ◦ 다만, (종이)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×1%

<신 설>

□ 지역(미)전송 가산세

○ 공급가액×가산세율

가산세율		'16	'17	'18	'19
지역 전송	법인, 개인사업자	0.1	0.5	0.5	0.5
	일정규모 이상 개인	-	0.1	0.1	0.5
미전송	법인, 개인사업자	0.3	1	1	1
	일정규모 이상 개인	-	0.3	0.3	1

<개정이유> 세원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

□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 중 과·면세 결업자

○ (발급의무) '15.7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○ (가산세)

- (미발급 가산세) '16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- (지역전송, 미전송 가산세) '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,
'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

□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

○ (발급의무) '16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

○ (가산세)

- (미발급 가산세) '17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- (지역전송, 미전송 가산세) '17~'18년(2년)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,
'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

□ (세액공제) '15.1.1.~'18.12.31.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